

#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중심으로 최 중 원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

A Study on “One’s Own Property” in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2024Do7611 on January 15, 2026

Jong-Won Choi  
BARUNLAW, Partner

**초록** : 이 글은 공동소유물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공유물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실무상 혼선이 있었으나, 대법판결은 공유물이 범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독립된 소유권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절도죄 등에서 공유물을 ‘타인의 재물’로 보는 법리는 공유자 상호 간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논리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공유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인정할 때 절도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보호법익이 침해된 결과로서 정당한 논리적 귀결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유물에 설정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단독 소유물과 다르지 않으므로, 공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반면에, 합유물과 총유물은 공유물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합유물은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않아 개별 합유자의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총유물은 재산이 비법인사단에 귀속되고 구성원에게 지분권조차 인정되지 않아 사원 개인의 소유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동소유물 중 ‘공유물’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판결은 기존의 실무적 혼선을 정리하고 공동소유 관계 전반에 걸친 해석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whether jointly owned property is included in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Article 323 of the Criminal Act,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4do7611 decided on January 15, 2026. Although there has been confusion in practice due to conflicting lower court decisions regarding whether tenancy-in-common property is included in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the subject decision provided an important standard by explicitly ruling that tenancy-in-common property

constitutes ‘one’s own property’ within the scope of the offender’s share.

A co-ownership interest is a quantitative part of ownership and is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independent ownership. The legal principle of viewing tenancy-in-common property as “the property of others” in crimes such as theft is intended to protect the mutual ownership rights of co-owners; therefore, there is no logical necessity for it to be directly applied to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which protects the limited real rights or claims of third parties. The fact that other crimes, such as theft, can be established when tenancy-in-common property is recognized as ‘one’s own property’ is merely a legitimate logical conclusion resulting from the infringement of separate protected legal interests; such circumstances cannot be viewed as contrary to equity, nor can they serve as grounds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itself. Therefore, since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rights of others established on tenancy-in-common property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sole ownership, tenancy-in-common property must be regarded as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On the other hand, jointly held property and collectively owned property are not considered to qualify as ‘one’s own property’ because their legal nature differs from that of tenancy-in-common property. This is because the disposal of shares in jointly held property is restricted,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independent ownership rights of individual joint owners; similarly, in collectively owned property, the assets belong to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since members are not even recognized as having share rights, they cannot be regarded as the personal property of individual members.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mong jointly owned property, only ‘tenancy-in-common property’ is included in ‘one’s own property,’ which is the object of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The subject decision holds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clarifies existing practical confusion and presents a direction for interpretation regarding joint ownership relationships in general.

• 논문접수 : 2026. 5. 29.

• 심 사 : 2026. 6. 9.

• 게재확정 : 2026. 6. 26.

## I. 서론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3조). 여기서 ‘자기의 물건’이란 행위자 소유의 물건을 뜻한다. 행위자와 공범이 공동소유하는 물건이나 행위자와 타인이 공동점

유하는 행위자의 소유물이 ‘자기의 물건’에 해당 함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판례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sup>1)</sup> 나아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sup>2)</sup>라고 판시함으로써, 권리행사방해죄가 자기 소유의 재물을 타인의 제한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2)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람만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sup>3)</sup>

그런데 행위자가 공범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하는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형법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sup>4)</sup> 공동소유의 형태는 공유, 합유 또는 총유인데(민법 제262조 내지 제278조), 이 중 공유물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이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공유물’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결을 선고하여 주목된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도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하에서는 공동소유물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로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공유물이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을 비롯하여 부정적인 입장에서 있는 종래의 하급심 판결들의 논거가 타당한 것인지, 대상판결의 논거가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고, 다음으로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대상판결 법리의 타당성을 살핀 후, 합유물과 총유물이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II. 공유물이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대상판결의 개요

#### 가. 범죄사실의 요지<sup>5)</sup>

피고인 A는 벤츠 S5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공유자(자동차등록원부 상 A의 어머니 B의 지분 99%, A의 지분 1%)이자 이를 실제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7. 9. 12. 피해자 J캐피탈 주식회사(이하 ‘J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 중 4,22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J캐피탈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1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캐피탈에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2018. 5. 25.경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건네 주면서 은닉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9. 5. 이후 위 차용금의 원리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캐피탈이 2019. 9. 11. 대전지방법원 2019타경\*\*\*\*호로 자동차 임의경매결정을 받아 2019. 10. 10. 위 법원 집행관이 피고인 A의 주소지에 임장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J캐피탈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방해하였다.

3) 同志: 지은석,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묘공동정범-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형사법의 신통향』 통권 제77호, 2022., 233~234면. 이에 반해 권리행사방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로는 김성룡, “정범 없는 공범과 규범적·사회적 의사지배” 『형사판례연구』 31, 박영사, 2023. 7., 105~106면.

4)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형법 제13장 중 일반건조물등방화죄(제166조)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과 자기 소유의 물건을 구분하고,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과 자기 소유의 물건을 구분하되, 형법 제176조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5) 제1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9고단4173, 2020고단591(병합), 2020고단620(병합), 2020고단1811(병합), 2020고단2373(병합) 판결의 실제 범죄사실은 수 개의 사기 및 횡령, 권리행사방해이나, 논의를 편의를 위하여 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소개하였다.

## 나. 소송의 경과

제1심판결은 A가 J캐피탈의 담보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J캐피탈 몰래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J캐피탈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A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대전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4202 판결)은 유죄로 인정되었던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항소심 판결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sup>6)</sup>

### 『 3. 당심의 판단

가.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참조).

2) 위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를 공유물의 경우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① 형법이 ‘타인의 재물’과 ‘자기의 물건’을 명백히 구분하여 절도죄,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은닉)죄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공동소유물을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보관(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가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2095 판결 참조), 공동소유자 중 1인이 공동소유물을 은닉하면 재물은닉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참조)(이하 ‘논거 ①’이라고 한다), ③ 공동소유물에 대한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는 이를 ‘자기의 물건’으로, 절도죄나 재물손괴(은닉)죄에 있어서는 ‘타인의 재물’로 본다면, 자신과 타인의 공동소유인 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취거 또는 손괴(은닉)한 사람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나 재물손괴(은닉)죄가 함께 성립하게 되어 단순히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또는 손괴(은닉)한 사람에게는 절도죄나 재물손괴(은닉)죄만 성립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점(이하 ‘논거 ②’라고 한다. 위 각 밑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추가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형법 제323조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로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와 타인의 공동소유물은 타인의 물건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기서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나.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당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B와 피고인 A 공유로 등록되어 있고, B는 단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는 피고인 A였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 J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 J캐피탈 모르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 J캐피탈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피고인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한편, 어떤 자동차에 관하여 수인이 공유자로 등록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자동

6)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판결이유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3) B와 피고인 A 내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 권리자가 피고인 A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J캐피탈 등 대외관계에서는 여전히 B에게 99%의 지분권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는 B와 피고인 A가 공유하는 것이고,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피고인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4) 실제 피해자 J캐피탈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B와 피고인 A 내부 사이의 약정 내용을 몰라 B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록 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자 J캐피탈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에게 그 행위로 피해자 J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 다. 대상판결의 요지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

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제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민법 제263조),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이처럼 공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공유관계에 의해 제약되나,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그 성질에 있어서도 독립된 소유권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물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공유자의 소유임과 동시에 자기의 소유에도 속한다고 할 것이다(이하 ‘논거A’)라고 한다. 밑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추가하였다. 아래 2), 3)항에서도 같다).

2) 대법원 판례는 절도죄와 횡령죄, 재물은닉죄에서는 공유물이 해당 범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하거나 자기가 보관 중인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공유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



로, 절도죄나 횡령죄, 재물은닉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횡령 또는 은닉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이유에서 공유물에 대한 절도죄나 횡령죄, 재물은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지, 공유물이 공유자인 범인의 소유로 평가될 여지가 없어 어느 때나 ‘타인의 재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3)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 외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소유자’가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위 2)항의 밑줄 부분과 통칭하여 이하 ‘논거 ㉔’라고 한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인인 공유자는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2. 종래의 논의

### 가. 학설의 개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공범 아닌 타인이 행위자와 공유하는 물건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로 이는 타인의 물건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sup>7)</sup>

### 나. 판결례의 개요<sup>8)</sup>

(1) 공유물이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례

(가)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단4085 판결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X승용차의 99% 지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에 X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인 甲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甲에게 X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자동차 인도명령에 따라 X승용차를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관할법원 집행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해 집행이 불가능하였다.

7) 김성돈, 『형법각론』 제10판, 박영사, 2025., 552면; 신동운, 『형법각론』 제4판, 법문사, 2025., 968면; 오영근/노수환,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25., 481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4판, 박영사, 2025., 485면; 임웅/이현정/박성민, 『형법각론』 제15정판, 법문사, 2025., 617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진정2판, SKKUP, 2015., 530~531면; 정성근/정준섭, 『형법각론』 제3판, 박영사, 2025., 395면; 조균석 편집대표, 『형법주해(XI) 각칙(8)』, 박영사, 2023., 21면; 조광훈, 『형법각론』, 진원북스, 2025., 1204면; 최호진,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25., 721면.

8) 이하 하급심 판결들은 로앤비 인터넷 사이트([www.lawnb.com](http://www.lawnb.com)), 법고를 인터넷 사이트([lx.scourt.go.kr](http://lx.scourt.go.kr))에서 형사 사건에 한정하여 검색어 ‘권리행사방해’, ‘공유’를 입력하여 검색된 판결들임을 밝혀 둔다.

## 2) 소송의 경과

위 법원은 특별한 논거의 제시 없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거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99%의 지분만 보유한 자동차로서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X승용차도 권리행사 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리 행사방해죄를 인정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노857 판결

### 1) 공소사실의 요지<sup>9)</sup>

피고인은 X아파트의 공유자(1/2지분 보유)로서 피해자에게 X아파트를 임대하였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인이 천장 누수 등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X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X아파트를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X아파트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낸 다음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 2) 소송의 경과

제1심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고정318 판결)은 특별한 논거의 제시 없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X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X아파트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유물도 권리행사방해죄

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민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정하고 있는바, 민법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유의 근본적인 성질은 소유권과 다르지 않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특정 물건에 관하여 제3자가 취득한 점유 또는 권리(이하 ‘권리 등’이라 한다), 즉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본적 목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유물에 있어서 공유자와 공유물에 대하여 권리 등을 취득한 제3자 사이의 관계를 공유가 아닌 물건에 있어서 소유자와 그 물건에 관하여 권리 등을 취득한 제3자 사이의 관계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은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재물’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유물의 경우 그 성질상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관하여는 ‘자기의 물건’에, 다른 공유자가 소유한 지분에 관하여는 ‘타인의 재물’에 각 해당하여, 형법상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재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공유물이 ‘타인의 재물’로서 절도죄, 횡령죄, 재물은닉죄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공유자가 공유물을 절취, 횡령, 은닉함으로써 나머지 공유자들(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 공유물이 ‘타인의 재물’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도 공유물은 ‘타인의 재물’일 뿐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9) 주거침입죄로도 기소되었으나 논의의 편의상 이에 대한 공소사실과 제1심법원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항소 내용 및 항소심판단은 모두 생략하였다.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단순히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지분에 의하여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유물에 대하여 권리 등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행위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한편 공유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도 반하여 취거 또는 손괴·은닉한 공유자의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나 재물손괴·은닉죄가 함께 성립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물이 자신의 지분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물건, 타인의 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짐으로 인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경우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와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절도죄나 재물손괴·은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단순히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또는 손괴·은닉한 사람에게는 절도죄나 재물손괴·은닉죄만 성립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반드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유자가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취득한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면, 해당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공유물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유물이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례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정15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노1468 판결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X상가를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X상가의 명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민사사건의 가집행 1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인의 X상가에 관한 강제집행 시점 이전까지 X상가에 대하여 정당한 점유권한을 가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X상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건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고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 2) 소송의 경과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X상가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서 소개된 논거①, ②를 근거로 들면서, 피고인에게 있어 공유물인 X상가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5. 7. 선고 2021고정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3114 판결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乙로부터 Y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를 해 주었으나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Y승용차를 丙에게 빌려주어 丙이 지급하는 임차료로 수리비를 충당하기로 乙과 협의한 후 이에 따라 Y승용차를 丙에게 빌려주었으며, 丙



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수령한 후 Y승용차를 임대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Y승용차의 공동 소유자로 명의이전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丙 으로부터 임차한 피해자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Y승용차에 장착된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가서 예비열쇠를 이용해 Y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수하였다.

## 2) 소송의 경과

제1심법원은 증거(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Y승용차가 행위 당시에 피고인 1%, 乙 99%의 각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자동차는 적어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가 그 소유자가 되는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고) (중략) 피고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형사법의 해석에 있어서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 물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고)<sup>10)</sup> 피고인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Y승용차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특별한 논거의 제시 없이 권리행사방해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제1심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되, 절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145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1808 판결

### 1) 공소사실의 요지<sup>11)</sup>

피고인은 X임야(1/7지분)와 Y임야를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X임야와 Y임야의 각 출입구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피해자 D주식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철제구조물인 출입문 2개와 유치권 행사 중인 토지임을 안내하기 위해 위 각 출입문 위에 게시하여 놓은 현수막 2매를, 丁(D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이 출입문을 개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철거 및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주식회사의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토지 2필지를 취거하여 피해자 D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 2) 소송의 경과

제1심법원은, 우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1/7 지분을 보유한 X임야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앞서 본 논거①, ②와 더불어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는 점(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분소유적 관계에 있거나 과반수 공유지분을 보유하여 배타적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sup>12)</sup>(밑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추가하였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은 형법

10)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서 밝힌 논거①에 해당하는 논증으로 이해된다.

11) 제물손괴죄로도 기소되었으나 논의를 편의상 이는 생략하였다.

12) 이 하급심판결은 공동소유 관계를 다시 세분하여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1필지 토지(또는 1동 건물)의 특정 부분

제323조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제1심법원은 X임야와 Y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이 철제구조물인 출입문과 현수막을 손괴하는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취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를 ‘X임야 및 Y임야에서 공유물인 X임야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단독 소유인 Y임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D주식회사의 ‘Y임야에 대한 점유’ 및 이를 전제로 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노3726 판결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X건물을 그 형 戊 등과 공동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E는 戊와 사이에 X건물 3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지로 점유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戊가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X건물 3층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망치로 피해자 E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X건물 3층에 설치된 전기분전함을 손괴하여 3층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X건물 3층 점유·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2) 소송의 경과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고정694 판결)은, 피고인이 戊 등과 공유하고 있는 X건물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건물에 관하여 1/5지분만을 보유한 戊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의 점유<sup>13)</sup>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앞서 본 논거①, ②를 근거로 공유물인 X건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구체적인 검토

#### 가. 개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범 아닌 타인이 행위자와 공유하는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들의 근거는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서 제시된 논거①(절도죄, 횡령죄, 재산은닉죄 등 재산범죄에서 시인되는 이른바 ‘공유물의 타인성’ 법리에 따라 ‘자기의 물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논거②(공유물을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로 인정하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로 정리된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논거㉠(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독립된 소유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공유물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볼 때 다른 공유자의 소유임과 동시에

(위차·면적)이 특정되고, 그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자처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기로 합의하되, 대외적 공시형태는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로 해 둔 관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2430 판결 등 참조)인 경우와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유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1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데(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X건물에 관하여 1/5지분을 보유한 戊가 피해자 E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과반수 공유자의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참조), 피해자 E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기의 소유에도 속한다)와 논거⑧(제한물권이 나 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공유물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를 들고 있다.

#### 나. 공유에 관한 민사법적 이해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공유를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로서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한 개이며 그것이 양적으로 각 공유자에게 분속될 뿐이라는 이른바 양적 분할설<sup>14)</sup>과 각 공유자는 각각 1개의 소유권을 가지며 각 소유권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서로 제한되고 그 내용의 총화가 1개의 소유권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는 상태라고 보는 이른바 다수소유권 결합설<sup>15)</sup>이 있다.<sup>16)</sup>

일물일권주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적 분할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따르든 공유관계에 있어 지분권은 독립된 소유권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된다. 형법상 재산범죄에 있어 소유권 귀속 판단이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공유지분권의 법적 성격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다. ‘공유물의 타인성’ 법리가 권리행사방해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1) ‘공유물의 타인성’ 법리

절도죄(형법 제328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재물은닉(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절도죄, 횡령죄 및 재물은닉죄 모두 ‘타인의 재물’을 범죄 객체로 삼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도 지적하는 것처럼 판례는 공유물이 절도죄와 횡령죄, 재물은닉(손괴)죄의 범죄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포함된다고 본다. 즉, ①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 2432 판결은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2095 판결은 “공동으로 임대한 임대목적물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공동임대인들의 공동소유에 귀속하여 공동소유자 1인이 임의로 잔금을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은 공유물 자체뿐 아니라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공유자

14)곽용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 물권(2)』, 2006. 3., 546면; 송덕수,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25., 379~380면

15)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2., 364면

16)판례는 “공유는 1개의 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달리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양적 분할설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있고(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824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공유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가 각기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단지 각 공유자가 가지는 각 소유권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 뿐”이라고 하여 다수소유권결합설에 부합하는 것이 있다(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46 판결).

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다. ❸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물인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치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옮겨 놓아 은닉한 사건에서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는 서로 재물은닉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라고 판시하였다.

(2) ‘타인의 재물’과 ‘자기의 물건’에 관한 해석이 연동되어야 하는지 여부

절도죄, 횡령죄 및 재물은닉(손괴)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인 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공유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공유물이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서 ‘타인의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이상 그 결과로 같은

재산범죄인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에 포섭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논거 ❶). 공유물은 자기 소유물이거나 아니면 타인 소유물, 2가지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절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에서 공유물을 타인 소유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 법리인 이상, 같은 재산범죄인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도 공유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재산범죄의 일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는 절도죄, 횡령죄, 재산은닉(손괴)죄와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엄연히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즉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제한물권과 채권인 반면,<sup>17)</sup> 절도죄, 횡령죄 및 재산은닉(손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라고 평가된다.<sup>18)19)20)</sup> 한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개별 범죄들의 객체는 각 범죄의 보호법익의 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가령, 판례는 이른바 ‘불법원인금여물’에 관하여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나,<sup>21)</sup>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sup>22)</sup> 사기죄나 횡령죄

17) 박재운 편집대표, 『주식 형법[각칙(5)]』,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4., 192면

18) 다수의 견해는 절도죄의 본질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데 있다는 전제 아래 그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라고 본다(배종대, 『형법각론』, 제16판, 홍문사, 2026., 269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4판, 박영사, 2025., 251면). 이에 대하여 소유권 및 이에 준하는 본권 외에 점유도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신동은, 『형법각론』, 제2판, 법문사, 2025., 1029~1031면; 정성근/정준섭, 『형법각론』, 제3판, 박영사, 2026., 217면; 최호진,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25., 414면)와 민법상 소유권이 아니라 그 재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사실상의 소유상태’가 절도죄의 보호법익이라고 보는 견해(오영근/노수환,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25., 270~271면)도 있다.

19)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박재운 편집대표, 『주식 형법[각칙(6)]』,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4., 322면). 이에 대하여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횡령죄의 보호법익이 민법상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상태라고 보는 견해(오영근/노수환,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25., 386면)가 있다.

20) 재물은닉(손괴)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다수설은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으로 본다(김성동, 『형법각론』, 제10판, 박영사, 2025., 536면; 박재운 편집대표, 『주식 형법[각칙(6)]』,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4., 579면; 배종대, 『형법각론』, 제16판, 홍문사, 2026., 504면; 조균석 편집대표, 『형법주해(XII) 각칙(9)』, 박영사, 2023., 577면; 최호진,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25., 706면). 이에 대하여 재물은닉(손괴)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의 이용가치가 아닌 재물의 효용 또는 이용가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오영근/노수환,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25., 465면; 임용/이현정/박성민, 『형법각론』, 제15정판, 법문사, 2025., 599면).

2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795 판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2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270 판결(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丙으로부터 丁 등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 등인 400만 위안을 교부받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출금·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모두 재산범죄에 속함에도 동일한 사법적 성질을 지닌 불법원인급여 물건에 관하여 이를 획일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3)</sup> 따라서 공유물이 절도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타인의 재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다른 구성요건인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동일하게 ‘타인의 재물’로 해석되어야 할 논리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공유물에 관한 절도죄, 횡령죄, 재물은닉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타인’은 공유물의 내부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소유권자를 말하는 반면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권리의 보유자’는 공유물의 내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존재하면서 공유물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와 기타의 재산범죄들은 각 범죄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sup>24)</sup>

따라서 절도죄, 횡령죄 및 재물은닉죄의 행위 객체인 ‘타인의 재물’ 속에 공유물도 포함된다는 해석론이 권리행사방해죄에도 그대로 연동되어 적용될 수 없다.

#### 라.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로서 ‘자기의 물건’에 공유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

는 견해는, 공유물이 ‘자기의 물건’에 포함된다 고 볼 경우 공유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취거 또는 은닉한 사람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나 재물은닉죄가 성립하게 되어 단순히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또는 은닉한 사람에게는 절도죄나 재물은닉죄만 성립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한다는 점(논거②)을 논거 중 하나로 든다.

#### (1) 새로운 보호법익의 침해와 형평의 문제

새로운 보호법익이 침해된 경우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것인가. 하나의 행위가 보호법익을 서로 달리하는 수 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은 우리 형법에 예정하고 있는 국면이다. 앞서 본 것처럼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절도죄의 보호법익과 서로 다르다. A의 하나의 행위가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이상, 그 새로운 보호법익에 대한 별개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해석적 귀결이고 오히려 정당한 해석방법이다.<sup>25)</sup> 따라서 대상판결 사안에서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인 C에게 다시 담보물로 넘겨준 행위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99%의 지분을 보유한 B의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절도죄 또는 재산은닉죄는 물론이고 J캐피탈의 저당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권

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400만 위안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 甲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 甲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3)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달리 해석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한 견해로는,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3.

24) 이진수, “공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경찰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26. 2., 22면.

25) 앞서 살펴본 하급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3114 판결에서, 권리행사방해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절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모두 동일하였다. 이를 기초로 우리 사안에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시인할 이유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Y승용차의 소유자는 피고인과 乙인데, 피해자가 이를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어서 공교롭게도 절도죄에 있어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통상의 경우 절도죄의 피해자는 물건의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임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반론은 온당하지 못하다.



리행사방해죄를 모두 구성한다.

## (2) 처단형과 형평의 문제

논거②에서 말하는 ‘반(反)형평’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논거②는 그저 공유물이 ‘자기의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공유물을 취거 또는 은닉하면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나 채물은닉죄 2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반면, 타인 단독 소유물을 취거 또는 은닉하면 절도죄나 채물은닉죄 1개의 범죄만 성립하므로 형평에 반한다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거②가 이른바 ‘처단형의 역전현상’을 염두에 두고 ‘반(反)형평’을 지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를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전자의 경우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은닉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합범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sup>26)</sup> 각각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처리를 거쳐 그 처단형이 9년 이하의 징역(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경합범 가중처리 결과) 또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재산은닉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경합범 가중처리 결과)이 된다. 그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없이 그 처단형이 6년 이하의 징역(절도죄의 처단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재산은닉죄의 처단형)이 된다. 타인 단독 소유물을 취거 또는 은닉하는 행위가 공유물을 취거 또는 은닉하는 행위보다 죄질이

나 범정이 더 무겁다고 평가한다면,<sup>27)</sup> 죄질이나 범정이 더 무거운 행위를 더 가벼운 처단형으로 다루는 이른바 ‘처단형의 역전현상’이 발생되어 언뜻 형평에 반해 보이기 는 한다.

그러나 형법 체계상 범죄론과 형벌론은 구분되는 것이고 ‘범죄 성립 여부’ 또는 ‘성립된 범죄간의 죄수 관계’는 ‘양형 판단’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즉 범죄가 성립되었는지, 성립되었다면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규명된 다음에야 비로소 양형의 문제를 따지게 되는 것이 형법 체계상 자연스러운 해석방법이다. 대법원 역시 “죄수평가를 잘못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sup>28)</sup>라고 판시함으로써 죄수평가가 처단형의 범위 결정보다 논리적으로 먼저 이뤄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sup>29)</sup>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위에서,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가 그 후 채혈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처단형의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죄수 판단을 달리 내린 원심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만 성립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불성립한다고 판단)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과 ‘양형의 기초로서의 책임’은 구별되어야 하고, 처단형의 불균형 문제는 선고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실제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sup>30)</sup>

26) 그러나 앞서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노857 판결의 취지대로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27) 그러나 제3자의 저장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유물의 경우를 상정해 볼 때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2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등.

29) 출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사법연수원 청원논총』 제15집, 2019., 113면.

3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은, 음주측정거부 후에 음주수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결국 우리 판례는 죄수 판단의 결과 처단형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수 판단의 결과 처단형의 불균형 문제가 파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과정에서 교정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유물을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로 보게 될 경우, 이른바 처단형의 불균형(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공유물에 대해 절도행위나 은닉(손괴)행위를 범한 사람이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타인 단독 소유의 물건에 대해 절도행위나 은닉(손괴)행위를 범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것(즉, 처단형이 더 높아진 것)은, 전자가 제한물권자의 법익과 소유권자의 법익을 모두 침해하였기 때문이다.<sup>32)</sup> 만에 하나 이와 달리 보아 처단형의 불합리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양형과정에서 참

작하면 충분할 뿐이다.

### III.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공유물 중 행위자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공유물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나아가 공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유물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행위자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함께 판시하였다.

공유지분권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그 본질이 독립된 소유권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제한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단형이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더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만 성립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04. 7. 28. 선고 2004노1808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로 혈액을 채취한 다음 그 혈액을 의사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교통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에 대하여 강제채혈을 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만 의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형사소송법이 강제채혈에 관련된 명시적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있는 데서 오는, 절차적인 불명확함이나 번거로움, 시·공간적 제약 등에서 비롯되는 실무 관행일 뿐이므로, 원심이 지적하는 처단형의 불균형이란 결국 위와 같은 실무 여건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이를 이유로 내세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함은 사리에 맞지 않고, ② 오히려 음주측정거부의 주체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뿐, 반드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두 사람의 운전자들이 각각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가, 사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한 사람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기준(0.05%)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은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원심의 논리를 따르자면 두 사람 모두 음주측정거부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비난가능성과 처단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며, ③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일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혹시 채혈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달하면 처벌이 감면될 지도 모른다고 착각한 나머지 채혈검사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뉘우친 것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의 경중에 관한 원심의 논리는 이 사건의 실제 내용과는 무관한 일반론에 근거한 것이고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견해는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과 양형의 기초로서의 책임을 혼동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심이 지적한 문제점은 선고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31) 심의기, “음주측정불응죄의 보호법익(법익의 창설)과 양형책임-대상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공 2004, 2071)-” 『고시연구』, 2005. 4., 131~141면은 이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보호법익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보호법익과 동일하지 않고 독자적인 보호법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보호법익을 창설’한 판례라고 평석하였다.

32) 이와 관련하여 우리 권리행사방해죄의 원형인 독일 형법 제289조의 해석론에서 추가 논거를 제시한 견해로는, 이진수, “공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경찰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26. 2., 26~28면.

물권이나 채권이 그 공유물 중 행위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대법관결의 취지는 재산범죄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논지와 일관되고 타당하다.

#### IV. 합유물과 총유물이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합유물의 경우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합유이다(민법 제271조 제1항 전문). 여기서 조합체라 함은 이른바 합수적 조합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뭉친 인적 결합체이기는 하나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여 단체로서의 단일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공유와 마찬가지로 합유에 있어서도 합유자는 지분을 갖는다.<sup>33)</sup> 그러나 합유지분은 공유지분과는 달리 조합체의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 조합체의 구성원인 자격과 분리하여서는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구성원인 자격과 분리한 지분권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민법 제273조 제1항 참조).<sup>34)</sup> 합유자는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민법 제273조 제2항, 제274조 제2항).

한편, 민법 제704조는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합재산이란 조합원 개인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는 의미이다.<sup>35)</sup> 특별재산으로서의 조

합재산의 의미에는 조합의 공동사업의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전부를 포괄하는 통일된 일체로서의 목적재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을 합유함과 동시에 특별재산으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조합재산 전체도 합유하고 그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고 봄에는 이견이 없다.<sup>36)</sup> 조합재산에 속하는 개별 물건은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의 객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별물건을 조합에서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들은 오로지 조합의 해산과 이에 따른 합유재산의 분할로 비로소 독립물건화한다. 이로 인하여 유효한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개별 물건에 대한 지분을 논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sup>37)</sup>

이렇듯 합유지분의 처분이 제한되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과 합유하고 있는 개개의 물건은 조합체의 조합재산이므로, 합유지분을 공유지분처럼 독립된 소유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합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합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2. 총유물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총유이다(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에서는 지분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유의 주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지 사원이 아니다. 이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33) 박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 물권(2)』, 2006. 2., 602면.

34) 박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 물권(2)』, 2006. 2., 611면.

35) 김용덕 편집대표, 『주식 민법[채권각칙 4]』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4., 527면.

36) 김용덕 편집대표, 『주식 민법[채권각칙 4]』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4., 527~528면.

37) 오소정, “공동소유의 법리에 관한 연구-합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사단법인 한국사법학회, 2019. 11., 376~377면.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충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276조).

따라서 이러한 충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충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V. 결론

지금까지 공동소유물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물의 경우 대상판결의 입장이 타당하다.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그 본질이 독립된 소유권과 다르지 않다. 절도죄나 횡령죄 등에서 공유물을 ‘타인의 재물’로 취급하는 법리는 공유자 상호 간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그 대로 적용할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공유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인정함에 따라 절도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의 행위가 다수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공유물에 설정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단독 소유물과 다르지 않으므로, 공유물 역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공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유물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이 행위자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이 실시한 이 부분 법리는 타당하다.

셋째, 합유물과 충유물은 공유물과 달리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합유물의 경우, 공동 목적을 위해 조합체의 조합재산으로 귀속되고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여 개별 합유자의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유물의 경우는 구성원에게 지분권조차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이 비법인사단에 귀속되므로 사원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공동소유물 중 ‘공유물’은 포함되지만, 그 법적 성격이 다른 ‘합유물’과 ‘충유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공유물에 관한 기존의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을 정리하고, 나아가 공동소유관계 전반에 걸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참고문헌 >

### 1. 단행본

-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2.
- 박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 물권(2)』, 2006. 3.
- 김성돈, 『형법각론』 제10판, 박영사, 2025.
-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채권각칙 4]』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4.
- 박재운 편집대표, 『주석 형법[각칙(5)]』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4.
- 박재운 편집대표, 『주석 형법[각칙(6)]』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4.
- 배종대, 『형법각론』 제16판, 홍문사, 2026.
- 송덕수,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25.
- 신동운, 『형법각론』 제4판, 법문사, 2025.
- 오영근/노수환,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25.

-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4판, 박영사, 2025.
- 임웅/이현정/박성민, 「형법각론」 제15정판, 법문사, 2025.
-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전정2판, SKKUP, 2015.
- 정성근/정준섭, 「형법강의 각론」 제3판, 박영사, 2026
- 조균석 편집대표, 「형법주해(XI) 각칙(8)」, 박영사, 2023.
- 조균석 편집대표, 「형법주해(XII) 각칙(9)」, 박영사, 2023.
- 조광훈, 「형법각론」, 진원북스, 2025.
- 최호진,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25.

## 2. 논문

- 김성룡, “정범 없는 공범과 규범적·사회적 의 사지배” 「형사판례연구」 31, 박영사, 2023. 7.
- 심의기, “음주측정불응죄의 보호법익(법익의 창설)과 양형책임-대상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공2004, 2071)-” 「고시연구」, 2005. 4.
- 심지원, “조합에 대한 재산권 귀속의 법적 성질과 법률관계-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저스티스」 통권 제174호, 2019. 10.
- 오소정, “공동소유의 법리에 관한 연구-합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사단법인 한국사법학회, 2019. 11.
- 이진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일고찰” 「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6. 6.
- 이진수, “공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경찰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26. 2.
-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3.
- 지은석,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 2022.
- 최종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사법연수원 청원논총」 제15집, 2019.

**주제어** : 권리행사방해, 자기의 물건, 공유, 합유, 공유

**Keywords** : Obstruction of exercise of rights, one's own property, tenancy in common, joint ownership, collective ownership